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 713호

산업단지 광역형 산학연협의체 지원계획 공고

산업단지 간 자원과 역량 연계 강화 및 상호 협력 기반 구축을 통한 산업집적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광역형 산학연협의체」 지원계획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1월 19일

산업통상부장관

목 차

1. 사업개요 ····· 2
2. 사업추진체계 ····· 4
3. 신청자격 ····· 6
4.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7
5. 선정평가 ····· 7
6. 협약 및 사업관리 ····· 9
7. 운영평가 ····· 9
8. 문의처 ····· 10
9. 신청제한에 관한 사항 ····· 11
10. 추진일정 ····· 11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 산업단지 광역형 산학연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 산업단지 간 협업 기반을 조성하고, 공동과제 발굴 및 지원과 R&BD 사업화촉진을 통해 산업단지의 혁신역량 강화

1-2. 사업명 : 산업단지 광역형 산학연협의체 구성·운영

1-3. 지원대상 :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붙임) 중심으로 2개 이상의 광역지자체에 소재한 2개 이상의 산단을 업종별·산업별로 연계하여 구성한 협의체

1-4. 지원기간 및 규모

○ (사업기간) '27. 1. 1 ~ '27. 12. 31 (12개월)

○ (사 업 비) 협의체당 180백만원 이내/연('27년 정부지원금 기준)

○ (지원규모) 협의체 25개 이내(기존 22개·신규 3개 내외)

1-5. 지원내용

○ (산학연기술혁신 활동) 협의체 회원 간 R&BD 과제기획 및 발굴 활동, 기술 세미나 등 R&BD 기획과 직접 관련있는 활동

< 산학연기술혁신추진 및 네트워크활동 구분 >

구분	활동 내용	예산
산학연기술 혁신추진활동	공동과제 발굴·기획, 워킹그룹 등 과제기획 활동	정부지원금 사용 가능
	기술 세미나, 컨퍼런스, 포럼, 공동교육, 정책 및 사업설명회	
	지원과제 평가·관리비, 회계정산비, 출장비, 수수료 등	
네트워크 활동	정기(임시)총회, 운영위원회	정부지원금 사용 불가
	단순 교류, 친목활동, 체육·문화활동	
	자체 포상, 기념품 제작, 경조사 관련 비용	
	기타 과제기획·기술교류 등과 직접 관련 없는 활동	

* 산학연기술혁신추진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5] 中 연구활동비 및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하 '동 사업') 세부관리지침

○ (산학연기술혁신 과제) 협의체 회원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R&BD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활성화, 데이터 진단 및 활용, 현장맞춤 교육훈련,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출원, 시험·분석 및 인증, 토털마케팅 지원

< 산학연기술혁신과제 (R&BD촉진과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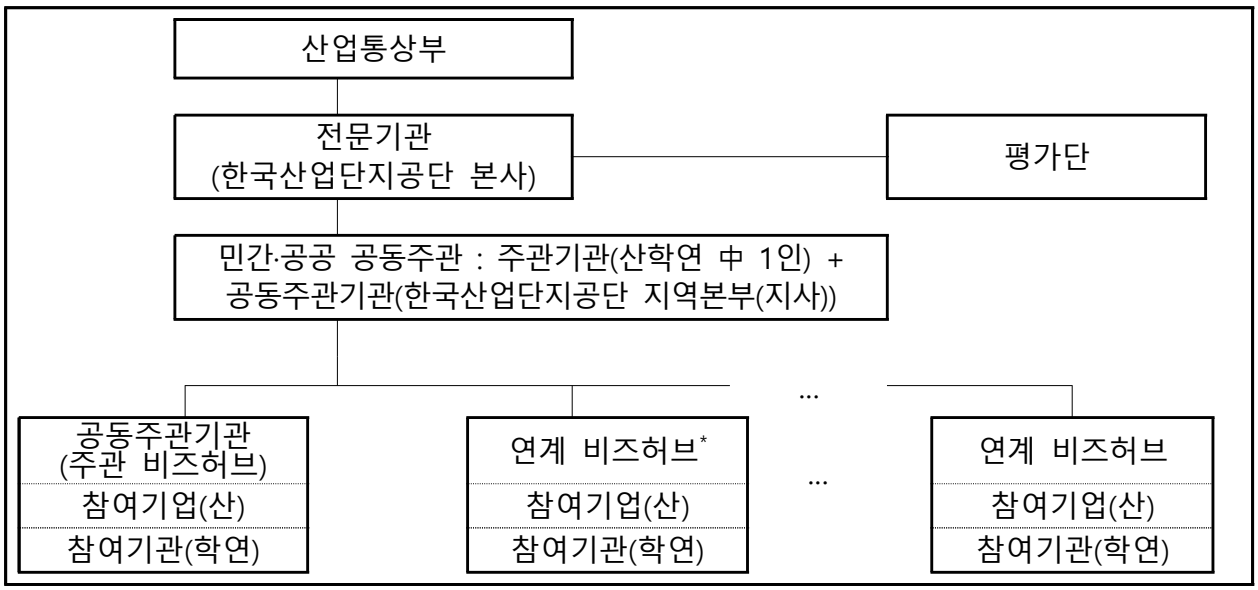
지원대상분야			지원내용	지원금액(건당)	지원비율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기술이전 활성화			산업재산권 이전 시 발생하는 기술료 성격의 경비	7백만원 이내	90% 이내
데이터 진단 및 활용			제조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컨설팅	20백만원 이내	90% 이내
현장맞춤 교육훈련			임직원교육지원(단순교육제외)	30백만원 이내	90% 이내
시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	20백만원 이내	90% 이내
지식재산권 출원	특허	국내	해당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	2백만원 이내	90% 이내
		해외		7백만원 이내	
	실용신안			2백만원 이내	
	디자인권			2백만원 이내	
	PCT국제출원			7백만원 이내	
시험·분석 및 인증	시험·분석	국내	규격, 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분석	3백만원 이내	90% 이내
		해외		5백만원 이내	
	규격인증	국내	국내외 규격인증 취득지원	5백만원 이내	
		해외		7백만원 이내	
토털마케팅	브랜드 지원		브랜드 네이밍 및 BI·CI개발	5백만원 이내	90% 이내
	홍보 지원		온·오프라인 활용 제품 및 기술 홍보	2백만원 이내	
	전시회	국내	전시 부스 임차료 등	3백만원 이내	
		해외		8백만원 이내	
	해외시장개척		수출상담회 및 해외바이어 발굴	5백만원 이내	

* 협의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수시 발굴하여 협의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집행 기준 : 동 사업 세부관리지침

※ 동 사업 세부관리지침의 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추진체계

2-1. 추진체계



* 비즈허브 : 사업관리(예산·과제·성과 등), 협의체 간 협업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협력기관 및 전문가를 활용한 기술기획·사업화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산단공 지역본부(지사)

2-2. 구성・운영체계

○ (주관기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기업 간 협력 단체(법인), 산학융합지구 주관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중 1인

< 주관기관 자격 요건 >

구 분	설 립 근 거 등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같은 법 제2조 제18호에 따라 입주한 입주기업체
기업간 협력단체 (법인)	○「협동조합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등 기업간 협력단체 관련법에 따라 설립·인가된 법인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득한 법인 중 기업 간 협력단체
산학융합지구 주관기관 등	○「산업집적법」 제22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4 제2항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대학, 산학협력단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공동주관기관) 주관기관과 함께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는 기관으로 주관지역에 소재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공동주관기관 역할과 함께 주관지역의 산학연협의체 운영·관리 역할을 공동 수행

○ (연계 비즈허브) 연계지역을 관할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참여 기업 및 기관) 주관지역 또는 연계지역 내 소재한 기업,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사업화촉진기업* 등

* 연구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기획, 자금 확보, 개발된 제품 및 서비스 판매 등을 지원하는 기업(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산업디자이너 등)

○ (주관지역) 주관기관 및 공동주관기관이 소재한 광역지자체

○ (연계지역) 주관지역과 연계하여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하며, 연계 비즈허브가 소재한 광역지자체

3. 신청자격

3-1. (구성요건) 아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협의체

< 협의체 구성 요건 >

<table>
<tr><th>구 분</th><th>구성 요건</th></tr>
<tr><td>총회원</td><td>① 협의체 당 총 회원수 100명 이상</td></tr>
<tr><td>기업체</td><td>② 총 회원수의 60% 이상(최소 60개사 이상)
- 1개의 기업체는 1개의 협의체만 가입 가능
③ 기업회원 중 산단 입주기업체 70% 이상(최소 42개사 이상)
④ 주관·연계지역별 앵커기업* 1개사 이상 필수 포함
* 관련 산업분야 밸류체인 상위 또는 높은 점유율을 확보한 기업으로 기술·시장 선도 등 산업 생태계 구축에 중요 역할 수행이 가능한 기업</td></tr>
<tr><td>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등</td><td>⑤ 협의체 총 회원수의 40% 이하
- 업종·산업별 지역혁신기관 참여(주관지역의 지역산업진흥원 필수 참여)
- 대학·연구소·지원기관 등은 다수의 협의체에 가입이 가능하나, 소속된 전문가는 개인별 2개 이내 협의체만 가입 가능
- 다만, 지원기관 중 액셀러레이터, 산업디자인社, 벤처캐피탈 등 사업화촉진기업은 전문가(개인)별 개수 제한 없이 협의체 가입 가능</td></tr>
<tr><td>주관지역 / 연계지역</td><td>⑥ (주관지역) 각 연계지역별 기업회원 수보다 많은 기업회원으로 구성
⑦ (연계지역) 기업회원 최소 10개사 이상
- 주관지역 또는 연계지역 기업회원 규모(개수) 산정 시 협의체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지역(주관지역 또는 연계지역)을 기준으로 함</td></tr>
<tr><td>운영인력(매니저)</td><td>⑧ 주관기관 소속 직원 또는 외부기관 위촉 가능</td></tr>
<tr><td>민간부담금</td><td>⑨ 총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의 10% 이상
<table>
<tr><th>항목</th><th>세부내용</th><th>민간부담금</th></tr>
<tr><td>네트워크 활동비</td><td>교류회, 운영위, 총회 등</td><td>현금(최소 10백만원)</td></tr>
<tr><td>인건비</td><td>협의체 운영인력 인건비</td><td>현금·현물 가능</td></tr>
</table>
- 협의체 정관에 민간부담금 운용·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협의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 전문기관에서 민간부담금 사용 현황에 대해 평가 시에 점검·확인할 수 있음
- 협약 시 협의체 민간부담금 전용 통장 및 인건비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를 통해 민간 부담 확인</td></tr>
</table>

4.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공고일 ~ 2026. 12. 21(월) 16:00까지

○ (접수방법) 신청기간 내 공동주관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에서 지사 취합)에서 전문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클러스터사업팀)에 공문으로 접수

○ (신청서류)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순서	제출서류명	비 고
1	협의체 사업계획서	[별지서식 1]
2	협의체 회원현황	[별지서식 2]
3	협의체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지서식 3]
4	협의체 참여(의사)확인서	[별지서식 4]
5	민간부담 확약서	[별지서식 5]
6	협의체 정관	자율양식([별지서식6]표준정관활용)
7	가점 신청서(해당시)	[별지서식 7]
8	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 입주확인서(기업의 경우)	-

※ 공동주관기관의 전자문서 붙임자료로 제출서류 일체 제출

5. 선정평가

○ (발표평가) 주관기관 총괄책임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발표 10분, 질의응답 15분)

※ 세부 평가 방법 및 일정은 전문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 (평가위원회) 외부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평가(전문기관)

○ (평가방식)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 중 각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후, 가점을 반영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협의체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동일한 점수를 받은 협의체가 발생할 경우 평가항목 배점 및 가점(1.사업추진체계 → 2.운영 및 성장전략 → 3.파급효과 → 4.가점)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협의체를 우선 선정하며, 평가항목 및 가점 점수가 동일한 경우 세부항목별(①→⑤→⑥→②→③→④→⑦→⑧) 고득점 순으로 선정함

- 선정된 협의체 중 협약 체결 기간 내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협의체가 있을 경우, 70점 이상 미선정 협의체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함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세 부 내 용	배점
1.사업 추진 체계 (40)	① 정책 부합성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부합성 •산업 간 연계 분석 및 관련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② 구성의 적정성	•산업분야 관련 기업회원 구성의 적절성 •공동과제 및 사업화 지원 관련 다양한 참여자 구성 등 회원구성의 적절성	10점
	③ 운영주체의 역량	•주관기관(지역본부 및 산학연), 매니저 역량 및 전문성	10점
2.운영 및 성장 전략 (40)	④ 사업목표의 적절성	•비전 및 중장기 목표 설정의 적절성 •성과목표 설정의 적절성	10점
	⑤ 협력계획의 구체성	•공동혁신을 통한 비즈니스 창출 계획의 구체성 •광역 간 혁신자원/정보 교류계획의 적절성	15점
	⑥ 지속성장 가능성	•자금 자체조달/운용계획의 적절성 및 분쟁방지 대응방안 •운영 매뉴얼 구축계획 및 자생적협의체 설립·발전 계획	15점
3.파급 효과 (20)	⑦ 기업성장 촉진	•참여기업 성장(혁신역량 및 규모 등) 가능성	10점
	⑧ 지역/산업 발전 촉진	•해당 산업집적지/지역/산업생태계 발전에 기여 가능성	10점
총 계			100점
가점	○ 사업화촉진기업* 참여 시, 사업화촉진기업 1개사 당 1점 부여(최대 5점) * 가점 대상 사업화촉진기업 ❶ 벤처캐피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❷ 액셀러레이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 ❸ 산업디자이너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산업디자인'을 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체 ❹ 사업화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의해 지정된 사업화 전문회사		

○ (결과통보) 주관기관별 별도 통보('26. 12월 말)

- 평가의견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수정·보완(결과통보 ~ 협약일까지)

6. 협약 및 사업관리

○ (협약체결) 전문기관 ↔ 주관기관·공동주관기관 간 협약('27. 1월 초)

- 총 사업기간은 1년으로 하되,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협약변경 가능

○ (사업관리) 공동주관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서 통합 관리

- 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통한 정부지원금 관리(예산집행 수시 점검)

7. 운영평가

○ (최종평가) 1년간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협의체 유지 및 취소 여부 결정

- 평가결과 기준점수(70점) 미만 협의체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 범위 내에서 협의체를 신규 선정할 수 있음

8. 문의처

○ (문의처) 한국산업단지공단 클러스터사업팀 및 지역본부·지사

구분		주소	연락처 070-8895-****
클러스터사업팀		대구 동구 첨단로 39	7253
전남광주	광주지부 (제주 포함)	전남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313, 하이테크센터 A동 5층	7910
	전남지부	전남광주 여수시 삼동3길 13, 여수혁신지원센터 6층	7977
	전남서부지사	전남광주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3로 81, 대불혁신지원센터 2층	7946
서울지역본부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38, 지타워 6층	7332
인천	지역본부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17	7447
	주안부평지사	인천 서구 가재울로 111, 주안dh비즈타워2차 10층	7464
경기지역본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57	7591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127	7735
경남	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54, 5층	7818
	서부지사	경남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8, 2층	7839
부산지역본부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19, 4층	7846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정동로 83, 5층	7887
전북	지역본부	전북 군산시 산단남북로 169, 종합지원센터 3층	7964
	익산지사	전북 익산시 동서로 370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 5층	7983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대구비즈니스센터 10층	7752
충청	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3공단2로 90-27 천안종합지원센터 2층	7621
	충북지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86, 오송프라자 604호	7632
강원	지역본부	강원 원주시 문막읍 여원로 1780, 3층	7658
	동해지사	강원 동해시 공단1로 7-5, 북평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2층	7637

9. 신청제한에 관한 사항

○ 주관기관이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의 사전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및 참여를 제한

10. 추진일정 (※ 일정은 사업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구 분	세부 업무	일 정	비 고
공모	사업공모	'26.11.19~12.21	전문기관 (클러스터사업팀)
▼			
신청·접수	사업 신청·접수	'26.12.21(월)限	공동주관기관 → 전문기관
▼			
평가계획 수립	평가 세부계획 수립 및 평가위원회 구성	'26.12.21~12.22	전문기관
▼			
선정 평가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26.12.23	전문기관
▼			
평가결과 통보	평가결과 통보	'26.12월末	전문기관 → 주관·공동주관기관
▼			
사업계획 수정	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정·보완 (필요시)	'27.1월中	주관·공동주관기관
▼			
협약체결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지역본부+산학연) 간 협약	'27.1.20(수)限	전문기관 ↔ 주관·공동주관기관
▼			
사업수행	사업수행, RCMS 등록, 실적점검	'27.1월~12월	주관·공동주관기관
▼			
최종보고서 접수	최종보고서 접수	'27.10월末	주관·공동주관기관 → 전문기관
▼			
최종평가	사업 실적 및 성과 평가(계속지원 여부 결정)	'27.11월中	전문기관
▼	※ 지원 중단 협의체 수에 따라 신규 협의체 공모		
사업비 정산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	'28.1월末	주관·공동주관기관

붙임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안)**

□ 5극3특 권역별 비전 및 성장엔진 육성방안('26.8월 발표)

※ M.AX 등 AI는 모든 산업의 기반 기술로 전 권역 공통 적용

권역	비전	성장엔진
중부권	첨단 전략 산업 글로벌 허브	- 차세대 디스플레이·반도체
		- 고부가 바이오의약·소재
		- 첨단 배터리
		- 미래 방산·수송 시스템
서남권	재생에너지 기반 반도체·AI 클러스터	- 미래 전력시스템
		- 첨단 반도체 혁신제조
		- AI 자율주행
		- 차세대 백신·정밀의료
대경권	첨단 소재부품·AI로봇 중심지	- 반도체 첨단소재·부품
		- 이차전지 핵심소재·자원순환
		- 첨단 모빌리티 부품
		- 첨단 AI 로봇
동남권	초격차 제조AI 산업 거점벨트	- 첨단 조선·해운
		- 우주항공·방산
		- 미래모빌리티 혁신제조
		- 차세대 원전·에너지
전북	차세대 생명·피지컬AI 제조산업 플랫폼	- 그린수소 플랫폼
		- 첨단로봇 파운드리
		- 농·생명 바이오
강원	AI·청정산업 혁신 거점	- 스마트 바이오·의료기기
		- 특수 반도체·세라믹
		- 청정 자원·관광
제주	미래산업 프런티어 실증지	-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 소형위성시스템
		- 청정바이오 웰니스